

#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3. 11. 24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미래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업무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조직 및 업무

**제2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교육성과관리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미래교육혁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전임교원, 전문연구원, 직원 및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업무)**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역량평가 관련 연구·개발 및 평가·환류 지원에 관한 사항
2. 핵심역량진단 계획, 운영, 환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4. 비교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5. 비교과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6. 비교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전공능력평가 가이드 개발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
8. 교육성과관리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## 제3장 교육성과관리센터운영위원회

**제4조(위원회 구성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교육혁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팀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(성과관리계획 수립 등)에 관한 사항
2. 센터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
3. 센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**제6조(위원회 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-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비교과운영위원회

**제7조(위원회 구성 및 기능)** ① 비교과과정 운영 및 통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비교과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「교육과정 운영규정」 제14조, 제15조, 제16조를 준용한다.

## 제5장 기타

**제8조(규정등의 제·개정)** ① 미래교육혁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.

- ②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 규정 등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「제규정 기본 규정」 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- ④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472, 2023.11.24.)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